

主題

전자상거래 정책과 해결과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 신 원, 경희대학교 서 청 석

차례

요 약

I. 서 론

II.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III.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

IV. 전자상거래 정책 이슈

V. 결 론

요 약

전자상거래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거래 양식으로 부각되고 그 거래규모와 중요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를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도 향후 산업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확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정부의 정책의도대로 전자상거래가 발전된다면 우리나라는 수년내 전자상거래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현존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전자상거래의 주요 정책을 분석한 후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보았다.

I. 서 론

전자상거래는 기업내부는 물론 고객과 협력기업 등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한편, 더 나아가서 기업간의 관계변화와 산업구조 자체를 혁신해 가는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거래 양식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시장의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를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최근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국경 없는 상거래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시장 선점 경쟁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차원의 전자

상거래정책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1997년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등 IT관련 기본법을 정비하고 여러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향후 산업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만일 정부의 정책의도대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는 수년내 전자상거래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나 이에 앞선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적인 문제점들이 현존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진국들의 전자상거래 정책 및 우리나라 정책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이슈를 도출해보려고 한다.

II.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1. 미국

가.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증진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첫째, 업체의 자기규제를 장려하고, 기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사기행위와 부정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적발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의 소비자 보호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둘째, 온라인 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민간부문의 코드 개발을 촉진하였다. 셋째, 암호정책을 변경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암호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전세계의 개인 및 사업자들이 암호화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대통령령 63호에 정한 Critical Infra-

structure Program을 통해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¹⁾

나. 인터넷 성장 촉진

미국 정부는 인터넷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정책을 제창하고, 새로운 설비 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철폐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전개를 촉진하였다.

또한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법적인 성과도 있었는데 첫째, 연구 및 실험에 대한 세액 공제를 5년간 연장하였다. 둘째, 정보기술과 차세대 인터넷과 같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셋째, 기술혁신 기업과 기업가에게 좋은 환경이 되도록 특허 시스템을 개혁하였다.²⁾

다. 글로벌 프레임워크 추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는 세계의 모든 구매자와 판매자들을 신속히 접속시켜주며, 이러한 세계적인 미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는 국가간 국경을 초월하여 통용

- 1) Critical Infrastructure Coordination Group은 “국가 정보 시스템 보호 계획(National Plan for Information Systems Protection, version 1)”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정보 시큐리티 모델을 만들고 정보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이에 따라 특허 프로세스에 절차적 지연이 있는 경우 특허 기간이 연장되고, 해외에서 제출된 특허 신청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적기에 공개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 기업가와 발명가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허/상표국(Patent and Trademark Office)을 Performance-Based Organization으로 설치하는 등 미국 특허 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다.

되는 원칙에 따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tariff) 모라토리엄 연장에 합의하였다. 또한 국제간 또는 양국간 교섭과 협의를 통해 프레임워크 원칙을 수용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새로운 양국간 합의의 구체적인 예로는 미-호주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미-이집트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등이 있다.

라. 정보격차에서 정보기회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첫째, 커뮤니티 기술 센터에 대한 투자를 1999년의 1,000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3,250만 달러로 3배 이상 늘렸다. 둘째,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였다. 이는 America's Career Kit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자와 노동자를 고용주와 링크 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민간부문에 대해 모든 미국인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에 보편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과 저가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넷째, "e-rate"의 실시로 100만 이상의 학급을 인터넷에 접속하였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국가군을 선정, 이들 국가군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생활 수준과 자유로운 의견 흐름을 높일 수 있는 지식에 접속하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영국

1998년에 발표된 "1998 Competitiveness White Paper"에서는 영국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된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가지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기업은 아직 완전히 전자상거래로 전환되지 않았다. 영국의 우수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들어 있지만 이들 기업 중 많은 수가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인드와 이용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는 전자적인 서비스 제공, 전자 조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 및 제안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간의 보다 확고한 협력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했을 때의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영국은 전자상거래로서 유럽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다음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인식제고(understanding)이다. 업계, 개인 및 정부는 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인식의 제고가 요구된다. 둘째, 접속(access)이 용이하여야 한다. 업계, 개인 및 정부가 정보화 시대에 완전하게 참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신뢰(trust)를 구축하여야 한다. 업계, 개인 및 정부가 새운 전자상거래와 새로운 사업 전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주요 장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foundation)이다. 분명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과세 정책 등 일부 분야에서의 투명성 부족하다. 둘째, 인식(understanding)의 부족이다. 잠재 수익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존재한다. 셋째, 접속(access)의 확대이다. 통신 및 컴퓨팅 기술에 대한 접속, 전자지불시스템에의 접속, 음성인식 등 기술적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장애인, 문맹자들의 접속의 확대가 요구된다.

3. 일본

일본은 통산성, 우정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본

표 1. 영국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보고서

시기	제목	주요내용
1998.5	Our Information 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시대에 있어 영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비전 - 2002년까지 모든 학교, 도서관, 대학을 National Gridfar Learning에 접속 - 2002년까지 모든 정부 서비스 25%를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 IT for all access center 구축 - 유해 콘텐츠 자율적 규제 유도
1998.10	EC UK Taxation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EC 과세정책 정립
1998.12	Our Competitive Future: Building the Knowledge Driven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을 세계에서 EC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된 국가로 만들겠다고 목표 설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즈니스간 형평성을 위하여 법제도 정비 - 중소기업의 EC를 보급하기 위한 기금 조성 - ICT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의 증진 - EC하의 지적재산권 프레임워크의 현대화를 위한 IPR action plan - 2001년까지 정부조달절차 90% 전자화
1999.3	Chancellor of the Exchequer's Budget Stat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개 이상의 고도 IT 학습센터를 개발하여 IT for ALL 센터에 대한 인식을 제고 - ICT 교육에 사용되는 Individual Learning Accounts에 대해 80% 세금 감면 - 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홈 PC 보급을 장려하도록 과세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온라인 소득신고에 대한 세금감면
1999.7	Modern Markets: Confident Consumers White Pap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 고객 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 - 온라인 품질보증을 통한 인터넷 쇼핑의 신뢰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업계주도 기관인 "Trust UK"조직 - 인터넷상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객 어드바이스 소스를 윈스톱 쇼핑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고객 게이트웨이(www.cinsumers.gov.uk) 구축
1999.7	EC B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교역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초안 - 전자서명을 인정하도록 법안 현대화 - 필요한 경우 중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법안 폐기 - 시범서비스 시장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승인

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까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간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 추진속도는 발달된 정보통신기반구조와 대조적으로 상당히 느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1998년 9월에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구성하여 일본의 전자상거래 정책 수립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

원하고 있으며, 1999년 4월에는 "전자상거래의 본격화"를 하나의 당면 목표로 삼고 있는 "고도 정보통신 사회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0년 5월 19일 "2000년도 고도정보화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정책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 일본의 전자상거래 정책

주요정책	정책내용	정책추진방법
전자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전자인증 가이드라인 제정 - 전자인증업무에 관한 제도 정비 - 전자공증제도 - 전자인증의 보급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인증제도의 구축을 위해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와 인증 및 공증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을 지원 - 인증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전자서명이 적어도 사인이나 도장과 동등하게 통용되는 법적 기반 확립을 위해 국제적인 정합성을 고려 - 본격적 실시시스템의 운용테스트 및 운용준비 및 법 정비를 추진 - 안심하고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외의 기술동향조사 및 보급개발활동을 실시
프라이버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방향 검토 - 개인정보보호등록 및 마크교부제도 - 인터넷 프라이버시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1999년도 중에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산하에 검토부회 설치 - 개인정보보호 등록 및 마크교부제도의 운용을 적극 지원 - 프라이버시 정보의 송도와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 - 전기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방향 법제화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본법과 국회에 법안제출
위법 및 유해 콘텐츠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바이더에 의한 자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 고기능 필터링 시스템의 개발 - 위법 콘텐츠에 대한 수사력 강화 - 네트워크 프로바이더의 "자주적인 가이드라인" 작성을 촉진 - 레이팅의 기본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바이더가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계약 약관을 책정할 수 있도록 모델약관의 책정을 지원 - 자동 등급부여 기능 등 필터링 시스템 기능을 대폭 확충시킨 시스템을 개발 - 외설적인 영상은 비롯한 위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개정통신영역정경화법에 의해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도 외설적인 영상에 관련된 노력의무가 부과 - 프로바이더의 자규제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및 레이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마크 제도 -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크 교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제정 및 온라인 상에서 적절한 거래를 행하는 사업자에 온라인 마크를 부여 - 인터넷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방향을 책정
거래일반에 관련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규범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거래규범의 명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무연한거래 및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에 관한 검토를 실시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화폐 등의 전송에 기여하는 통신의 안전 및 신뢰성 향상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에 관한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인터넷에 관한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 등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수단으로서 유망한 전자화폐의 안전성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 -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에 관련된 공정한 거래규범과 이용자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전자화폐 발행주체의 적격성 요건, 전자화폐 발행주체 파탄시의 대응 등 필요최소한의 법적 환경정비에 대한 검토를 추진
지적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의 정비 -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 - 저작권 권리정보 제공체제의 정비 - 저작권 관리사업법안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피 프로텍션 등 기술보호수단 회피장치의 규제" 및 "전자적 권리 관리정보 개편 등의 규제" 등 국내법의 개정 및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청각장애자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조치" 등의 국내법 개정 -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에 행해지고 있는 복제관리, 액세스관리를 무효화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의 제공은 금지정규의 대상으로 함 - 저작물 유통 및 활용의 원활화를 위해 J-CIS(저작권 권리정보 집중시스템) 구상을 추진 - 저작권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달과 저작권자 및 이용자 쌍방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 관리사업법안 제정
도메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메인명에 관한 제반과제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ANN이사의 국제적 직접선거에 대비해 투표자인 일반회원(At Large Member)에의 등록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대표자를 이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 - 도메인명의 부족이나 상표권에 관련된 분쟁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gTLD(일반 토폴레벨 도메인)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ccTLD 관리의 기본방향 및 관용촉진에 대한 검토를 실시 - 인터넷이용의 편의 향상을 위해, 현재 영수자와 일부 특수기호만 허용되고 있는 도메인명의 다언어화(iDN) 실현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에 있어 바람직한 과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에 있어 적절한 과세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보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상의 관세에 대한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상의 관세에 대한 취급에 대해, WTO협정과 관계를 정리하고, 국제적인 취급의 정합성을 도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기 즉시상각제도의 창설 -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통신시스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등 정보통신기기의 즉시상각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기업 등의 정보통신기기 취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자인증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선비투자 및 환경정비의 촉진을 도모 - 전자인증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정보처리 및 통신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개발은행 등을 통한 출자 및 융자를 실시

자료 : 일본 내각 내정실의실 발표자료, 2000년도 고도정보화 행동계획, 2000. 5.

표 3.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B2B	400	1,800	4,800	11,000	22,000	42,000	71,000
B2C	400	900	1,700	3,000	4,800	7,500	11,000

자료 : 앤더슨 컨설팅, 1999.

Ⅲ.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

1.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은 미약한 편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B2C만이 부각되고 있으나 B2B는 실제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00년말 현재 시장 규모가 2,600억원에 불과하여 시장형성 초기 단계에 있으나 2005년 8조 2천억으로 예측되고 있다. B2B 시장의 경우 그 동안 일부 컨설팅 및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중심에서 탈피하여 종합상사들을 필두로 금융권, 자동차, 물류산업 등 전 산업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B2B 시장이 팔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³⁾

국내 B2C 시장규모는 1999년도 400억원, 2000년도 900억원으로 성장하고 2001년도에는 1,700억으로 향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전체 소비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며 여전히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통신판매업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즉 국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제성, 편리성 등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따른 불안감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는 우선 상대방의 대기업 공급사들이 기존 유통채널이었던 대리점들을 의식, B2B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 무척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⁴⁾

4) 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는 세계 60여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일반 기업환경 및 전자상거래 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여건분석을 통해 한국은 민영화 및 자율화 등 구조개혁노력으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1999년도 구매력기준 GDP가 10,529불을 기록하는 등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인터넷 사용인구(11.5백만명, 2000.1월 현재), 통신판매 및 온라인 금융거래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인터넷 이용을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EIU는 금년도 아시아지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154억불에 이를 것이며 이는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약 7%에 해당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이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3) 최근 국내 종합상사들을 중심으로 B2B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B2C 시장에 비해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하였으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SI업체 및 국내 SI 업체들의 발빠른 전환에 힘입어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서 B2B 부문에서의 성장은 전체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표 4. 전자상거래 발전목표 및 중점시책

발전목표	중점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를 산업과 무역의 기본 축으로 육성 - Global 전자상거래 시대의 중심(hub) 국가로 부상 - 전자상거래 비중을 우리의 세계교역점유율(98년 2.1%) 수준으로 제고 - 99년 0.8%, 21억불 → 2003년 2%, 200억불내외 -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 선진화를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고 - 네트워크, 기술, 인력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확충 - 공공부분의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해 경쟁력 제고 -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 대비

자료 : 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 2000.2.

2. 전자상거래 정책

정부는 산업과 무역 전반에 걸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우리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부분에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하여 경제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공공부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나타난 전자상거래 중점시책으로는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 제고, 네트워크, 기술, 인력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확충, 공공부분의 전자상거래 촉진으로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 대비 등이다.

전자상거래 기반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5대 중점시책과 40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공공부분, 산업부문,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하고, 다만 앞으로 경쟁 가속화에 따라 정부가 정보통신시장에 있어서 경쟁과 집중(convergence)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여부가 향후 전자상거래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보완이 선행되어야 전자상거래의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표 5 참조).

한편 전자상거래활성화정책이 성공하였을 경우 기대효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프라분야는 전자자금이체·전자서명제도 등 법·제도와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가 구비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산업분야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1999년 21.7억불에서 2003년 200억불 내외로 1999년 기준 9.2배 증가하고, 문서량 감소, 전자구매, 공동물류 등 구매·관리·경영혁신 등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2003년 이후 연간 최소 15조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수직 계열화된 산업구조가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되고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무역분야는 수출거래선 확대, 수출마케팅 능력 제고 및 수출부대비용 절감 등으로 사이버 무역비중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사이버 무역 비중은 1999년 4.6%에서 2003년 30.4%로)하며 나아가 중소기업의 무역기회 대폭 확대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무역업무 처리로 무역비용이 절감되고, 인터넷마케팅 강화 및 거래선 확대로 수출기회가 증대되고, 사이버 무역 중개서비스업의 발달로 컴퓨터

표 5. 전자상거래 정책목적 및 세부시책

	정책목적	세부시책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무한한 사이버 공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 -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존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전자자금이체 관련 제도 완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공정위)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보급(공정위)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본격 가동(산자부) -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전면 시행(정통부) - 민간부문 상호이용 활성화 위한 법규제정 추진(국정원, 정통부) -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확립(문광부, 정통부, 특허청) -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정통부) - 소비자보호 지침 지속발전 검토(공정위) - 전자상거래관련 법규 정비 및 국제규범의 수용(법무부) - 전자상거래 세제 지원(재정부) - 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산자부, 정통부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지속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기업 정부간 불협화음이 없는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기술, 인력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정통부) -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산자부, 정통부)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수요가 크고 개별 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과 차세대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산자부, 정통부) -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3개년 계획수립·추진(산자부) - 정규교육기관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강화(교육부, 정통부) - 민간부문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지원(노동부, 정통부) - 전자상거래 분야 국가자격 신설·시행(노동부) - 기업간 전자상거래지원 정보공유네트워크 구축(산자부) - 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기반조성 및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공동물류체계 구축(산자부, 외교부) -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업별 공동물류체계 구축 - 기업-스미자간 전자상거래 공동물류체계 구축 지원 - 물류기반 확충(산자부, 외교부, 해수부, 관세청)
공공부문(정부·공기업)의 전자상거래 가속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문 전자조달 조기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의 전자화 추진(조달청, 정통부) - 국방 CALS/EC체계의 조기구축(국방부, 정통부) - 건설 CALS/EC체계의 조기구축(국고부, 정통부) - 공기업의 전자조달 체계 확산 유도(기획예산처, 정통부) - 전자조달 도입실적을 포함하여 공기업의 정보화 추진실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 조달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재정부, 조달청) - 입찰공고 등 시행이 용이하고 시급한 부분은 2000년중 개정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경제되고 수익적인 Business process (부품조달·생산·물류·판매 등)를 혁신, 유연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산업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 주요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전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산업 확대 및 지원 강화(산자부, 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8개(섬유·전력·유동·추가) -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증진추진단 구성·운영(산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을 가속화하는 통합추진체계 구축 - 산업별 전자상거래 본격 추진(산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추진되고 있는 산업(전자·자동차) - 사업추진 준비중인 산업(조선·철강·중공업) - 신규 추가 산업(섬유·전력·유동) -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 촉 조성(산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상반기중 산업별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eCEO 회의회' 구성·운영 -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심의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과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 - 경쟁력 있는 기존 유통채널의 전자상거래화 촉진(산자부) - 자율적이고 원활한 업종연합 지원(산자부)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전자상거래 시대에 우리 기업이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 무역채제의 진척이 시급 - 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사이버 무역은 무역업체의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지원법령으로 개정(산자부) - 사이버무역 단계별 지원시책 추진(산자부) - 무역·통관업무의 전자적 처리(EDI) 확대(산자부) - 사이버 무역 지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바이어 통합발주시스템 구축(산자부) - 무역협회 KOTRA 등의 거래할선 web-site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검색체계(Silkroad 21)를 구축, One-Click Service 제공 -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 여건 조성 지원(중기청) - 중소기업 홈페이지 및 전자상플랫폼 구축 지원 지속추진 - 전국적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충(산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2001년까지 15개로 확충하여 전국적인 사이버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사이버 무역 지원거점으로 활용 - 전자상거래 국제협력(외교부, 재정부, 산자부, 정통부 등) -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내국세 부과 등에 관한 WTO OECD 등의 논의 동향 및 선진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자료 : 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 2000.2.

만 갖고도 무역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분야는 업무처리 시간단축, 문서량 감축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조달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2003년 연간 15.8조원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건설분야 10.3조원, 국방분야 5조원, 정부조달분야 0.5조원), 사업공기 15~20% 단축 및 문서량도 70% 이상 절감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은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 촉진 등으로 0.2%~0.4%의 불가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개인의 선호에 고려한 맞춤형(Customized) 판매활동 및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되어 소비자 주권시대가 개막되고, 인터넷쇼핑, 온라인뱅킹, 원격진료 및 원격교육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발전목표로 삼아 각 부처별로 소관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되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 수립하기로 하였다.

IV. 전자상거래 정책 이슈

대한상공회의소(2000)가 조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통신요금의 인하, 사이버 쇼핑몰 인증제 도입 및 공인인증기관 도입, 전자상거래 공동물류망 지원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통신

속도와 이용요금을 지적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을 위해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의도대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정책적 이슈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표 6.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

분야	세부 내용	비율(%)
세계·금융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59.7
	- 신용카드사와의 수기전표매출특약 원활화	15.1
	- 부가가치세 감면	45.4
	- 정책자금 지원	6.6
인터넷 인프라	- 인터넷 및 pc통신 요금인하	32.2
	- 인터넷 인프라 구축	17.1
	- 전용선 요금 인하	4.6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 사이버 쇼핑몰 인증제 도입 및 공인인증기관 설립	24.3
	- 전자화폐의 도입	21.7
	- 사이버거래 사기 피해보상 보험제도 마련	17.1
	- 안전하고 공인된 결제시스템 도입	16.5
	-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정비	8.6
물류	- 전자상거래 공동물류망 지원	13.8
	- 택배비에 대한 특별단가 적용	5.3
	- 물류인프라 정비	1.3

주 : 복수응답

자료 : 사이버 쇼핑몰 실태분석, 대한상공회의소, 1999.

표 7. 인터넷 이용시 불편한 점

(단위 : %)

	느린 통신속도	이용 금액부담	이용 방법 어려움	정보 검색 어려움	언어 소통문제	기타	없음
2001. 3	54.9	10.7	6.7	8.9	1.3	0.1	17.4
2000.12	52.7	6.5	3.8	9.2	1.2	1.0	25.6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4.

표 8. 정부의 전자상거래 주요 정책 이슈

	주요 정책 이슈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 전자문서의 법적 인정 - 소비자보호 확대 -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는 유통업에 속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누리는 세금 혜택을 못 받고 행정 규제를 받는 실정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부가가치세 5%로 감면 등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통신망의 조속한 확충 -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확보 - 인터넷·통신 요금 인하 - 기술의 표준화
공공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부조달 활성화 -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조성 및 투자 확대
산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인드제고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확대 및 적극적인 사이버 수요 창출 지원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해결기구 설립 - 전자자금의 이체 및 금융공동망 설립 - 다 국간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 정보인프라 구축 및 B2B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간 통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확대 및 적극적인 사이버 수요 창출 지원 - 전자상거래 인력 확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정책이슈를 법·제도측면, 기업측면, 소비자측면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법·제도 측면의 주요 정책이슈로는 첫째, 전자자금이체법의 미 제정을 들 수 있다. 전자자금이체법은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이고, 자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적 환경 구축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전자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전자외상매출권 등을 기존의 어음수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써 기존 어음·수표법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양도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승낙, 대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지명채권 양도시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을 전자적인 등록으로 해결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도 전자등록기관의

기록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자화폐 업체에 대한 규율과 전자자금이체시 해킹 문제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⁵⁾

둘째,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B2B 전자상거래 상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이나 대규모거래에 따른

5)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각 정부부처간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주관부처가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거래기본법은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서명법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전자자금이체법이 제정될 경우 재경부에서 주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부처간의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법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책임소재 등을 가려낼 만한 분쟁해결기구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구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각 업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국제간 거래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문서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B2B에서 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계약에 관련된 서류, 발주서, 보증보험, 인감증명 등 많은 서류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관련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려 해도 아직까지 이들 전자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관련 주요정책이슈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B2B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은 B2B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B2B를 위한 ERP, SCM 등 개별 IT 솔루션 도입과 통합 인프라구축 및 거래구조개혁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경영자들은 B2B로 거래할 경우 경영구조가 공개되고 거래현황이 투명해지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하다.

둘째, 정보인프라 구축이 미약하다. 진정한 전자상거래의 실현은 설계, 제조, 수주 및 납품에서 기업 내부 프로세서, 생산, 유통, 물류,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즈니스 단계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기업과 기업이 연결되어 있어 한 기업이 B2B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다른 기업이 그 기업에 대하여 B2B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⁶⁾

6) 전국경제인연합(2001)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평균 IT 예산은 연간 매출액의 5%수준이나 국내의 경우 IT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도 2%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출에 중사하는 국내기업이 3만개를 넘지만 이중 EDI를 구축하여 사용하는 기업은 8,000개 미만이다. 특히 전통적인 EDI의 경우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투자비용이 커 국내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시스템간 통합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가 강조되는 것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상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으면 기존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기종 포맷을 전환해야 하는 부수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용과 효율을 높이려고 도입한 전자상거래가 비용을 높이고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기술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초기 시스템 설계에서 구축에 이르기까지 단일 기술대안이 없으며, 최근 들어 국내의 선도업체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 각종 신기술의 표준화는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표준화에 대한 기업의 마인드가 약해 표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전자자금 이체 및 금융공동망 구축이 요구된다. 전자상거래 상의 전자자금이체에 따른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공동망 이용도 시스템 보안을 이유로 아직 허용이 되고 있지 않으며, 전자상거래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은행발행의 구매전용 카드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은행들이 카드 발행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정부의 법인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가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의 주요정책이슈로는 첫째, 상호간 신뢰 형성이 요구된다.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사업은 비대면 관계라는 특성으로 개인 소비자와 기업간 사기 및 남용 기회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전자상거래에서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거래상의 안정성 및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

선 고객과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오용, 사보타지, 절도, 첩보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정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안전중심의 거래 문화, 아웃소싱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해킹 등 보안문제도 불안한 요소다.

셋째, 소비자보호의 확대이다. 전자상거래가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사기·기만행위,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 국제거래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시 느끼는 불만중 개인정보유출(19.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넷째, 인프라 구축의 확대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느린 속도(54.9), 이용요금의 부담(10.7%), 이용방법의 어려움(8.9%), 정보검색의 어려운(8.9%), 언어소통의 어려움(1.35) 등으로 응답하여 느린 속도와 이용요금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확충을 위한 초고속통신의 확충과 정책적 이용요금의 도입이 요구된다.

V. 결 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이슈는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한 조치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상의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이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상의 전자문서가 합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요이슈로는 B2B와 B2C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B2B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가 요구되며, 인프라

리구축, 시스템간 통합, 기술신뢰, 표준화, 전자자금 이체 및 금융공동망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B2C의 경우, 먼저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상의 안정성과 보안 확보, 상거래상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선진국들의 전자상거래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증진, 인터넷 성장촉진,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전자상거래 추진, 정보격차 해소, 법·제도 기반 정비, 소비자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을 위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편안하게 마음놓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의 구축과 이용자의 편이성이 증대되어야하며 이를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 안전성과 보안 확보, 기업 및 소비자의 보호방안 확보, 인프라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원, 인터넷무역에 관한 국제논의와 해결과제 연구, 국제무역학회 6(1), 2000.4. pp.55-85.
- 남인석, 전자상거래 확산과 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YMCA 전자상거래 세미나, 1999.5.
- 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 경제와 e-business, VIP 리포트 제6호, 2000.2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 백서, 2000.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전자상거래 통계자료, <http://www.ecommerce.go.kr/>
- 산업자원부, 디지털 시대의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주요 산업별 비전 및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산자부, 2000.7.
- 전국경제인연합회, eKOREA 추진을 위한 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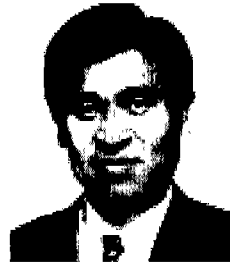
정비 방안, 2001.3.
 정보통신부 외, 전자상거래종합대책, 2000.2.15.
 정보통신부, 차세대 e-business 기반구축전략, 3001.3.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형태조사 요약 결과보고서, 200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동향, 주간기술동향(936), 2000.3.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일본의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동향, 주간기술동향 (938), 2000.3.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국의 전자상거래 추진 정책, 주간기술동향 (959), 2000.08.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B2B 전자상거래 폭발적 증가 전망, 주간기술동향(941), 2000.5.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세계 B2C및 B2B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 주간기술동향(973) 2000.11.22
 현대경제연구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쟁력 기반의 재구축, VIP Report 제215호, 1998.11.30.
 Lee, Jong-Nam, Forecasting E-Business, GartnerGroup, 2000.6.14.
 Mann, Catherine L., Electronic Commerce in Developing Countries: Issues for Domestic Policy and WTO Negotiation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ch 2000.
 OECD,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 Preliminary Findings and Research Agenda, DSTI/ICCP(98)15/PART3, 1998.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7 (<http://www.whitehouse.gov/WH/New/Commerce/read.html>)
 US Electronic Commerce Policy, <http://www.ecommerce.gov/>



강 신 원

1986년 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1년 University of Santo Tomas 경제학 석사, 1996년 Colorado School of Mines 자원경제학 박사,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관

심분야 : 전자상거래, 국제기구 및 국제통상협상, 정보 경제 및 정책, 네트워크경제



서 청 석

1972년 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 1976년 경희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0년 University of Santo Tomas 특별초빙연구원, 1982년 경희대학교 경제학 박사, 1987년 UCLA 객원교수, 현재 경희

대학교 정경대학 학장, 경제통상학부 교수,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국제기구 및 국제통상협상, 지역경제통합